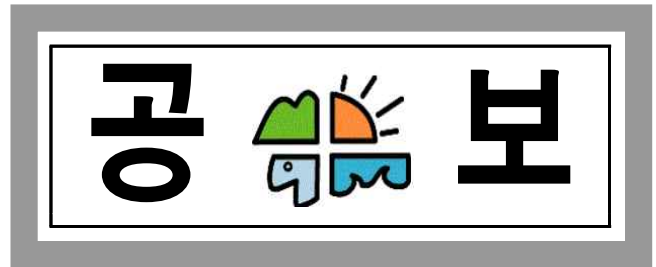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12호 2022년 9월 14일(수)

입법예고

-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체계적인 지진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 및 정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 필요에 따라 증원

나.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등

다. 위험도 평가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인근 시·군·구에 지원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경우 응해야 함
- 평가단원 안전 최우선 고려 및 보험가입 조치, 필요 경비 지급

라. 평가단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질병 등 사유로 임기 만료 전 해촉 가능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안전총괄과(방재복구팀)

2) 연락처 : 전화 033-639-1514, FAX 033-639-2970

3) 전자문서 : shin804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033-639-1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속초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강원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

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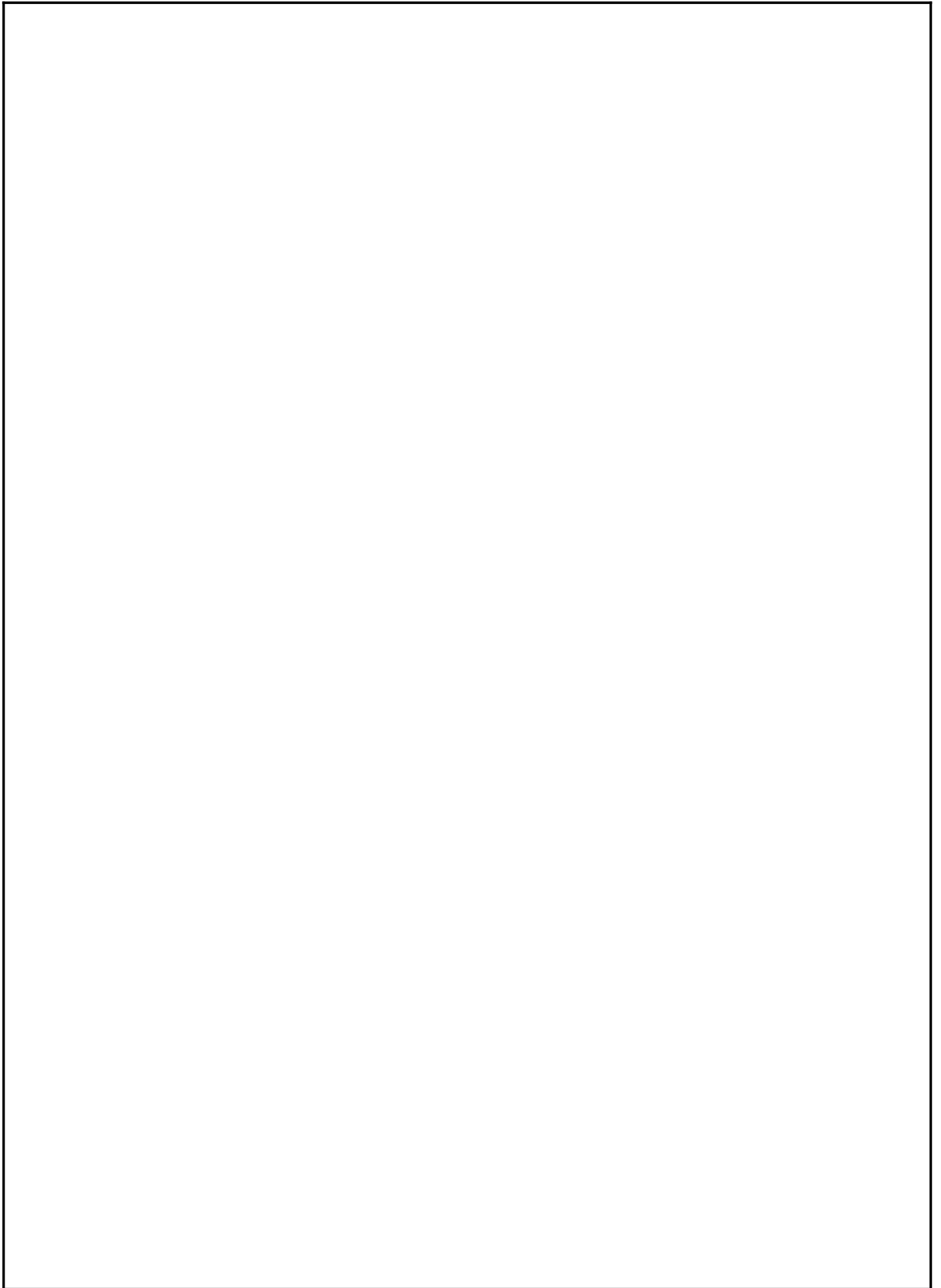
제10조(임기 및 해촉) 위촉된 평가단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명 :

소속 :

주소 :

사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0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1) 경력: 40점 이내
- 2) 학력: 20점 이내
-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3) 용 접 5) 일반기계	2) 건설기계 4) 승강기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무 종류		직무 범위
생산관리		
디자인		제품디자인
건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조경)	조경
	(도시·교통)	교통, 도시계획
광업 자원	(채광)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	철도차량
	(조선)	조선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자동차)	차량
	(금형·공작기계)	금형
재료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용접
	(도장·도금)	표면처리
화공		화공
섬유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전기)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 통신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	정보통신
식품		수산제조, 식품
농림 어업	(농업)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축산
	(임업)	산림
	(어업)	수산양식, 어로
안전 관리	(안전관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에너지·기상)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비고: 직무종류의 괄호는 함께 적을 수 있다.